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왕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68

발의연월일: 2025. 4. 23.

발 의 자:서왕진·임호선·정춘생

황운하 · 김선민 · 박은정

차규근 · 김준형 · 강경숙

신장식 • 이해민 • 백선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,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.

그런데 정책펀드는 모태펀드-자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자펀드의 청산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펀드의 규약에 따라 재투자되고 있고,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의 회수재원 규모나 회수 재원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정책펀드의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책펀드 운영의 일관된 기준

을 마련하고,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,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펀드가체계적으로 관리·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국가가 출자・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, 「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.

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2(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) 국가가 출자·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및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,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정책펀드 출자 펀드의 청산금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) 제53조제6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출자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3조(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	제53조(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
외) ① ~ ⑤ (생 략)	외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⑥ 국가가 출자·출연한 예산
	을 재원으로 하는 「벤처투자
	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벤
	<u> 처투자모태조합, 「농림수산식</u>
	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
	한 법률」에 따른 농식품투자
	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정책펀드가 출자한 펀드
	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
	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
	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
	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
	고 재투자할 수 있다.
<u>⑥</u> (생 략)	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53조의2(정책펀드에 관한 국회
	보고) 국가가 출자・출연한 예
	산을 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정책펀드의 소관
	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
	드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
	및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

계획,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 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.